

#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4 ~ 61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4. 8. 20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○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3조의2 폐지(2009.7.7.시행)로 시군 위임사항이었던 주차전용 건축물의 설치기준이 「주차장법」 제12조의2에 명시됨에 따라 우리 조례상 해당조문을 삭제하여 전국적 통일적 집행을 중시하는 현행법을 준수하고자 함.

○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세분화하여 규제를 완화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제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12조)

○ 조례 위임근거였던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3조의2 폐지(2009.7.7.시행)

나.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일부 변경함(안 별표 2)

○ 현행) 7. 그 밖의 건축물 : 시설면적 300㎡당 1대

⇒ 변경)

시설물	설치기준
7. 수련시설, 공장(아파트형은 제외한다), 발전시설	○시설면적 350㎡당 1대(시설면적/350㎡)
8. 창고시설	○시설면적 400㎡당 1대(시설면적/400㎡)
9. 학생용 기숙사	○시설면적 400㎡당 1대(시설면적/400㎡)
10. 그 밖의 건축물	○시설면적 300㎡당 1대(시설면적/300㎡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주차장법」 제12조의2 및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, 규제개혁추진단)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
(2) 규제심사 : 폐지 및 완화함

(3) 입법예고

○ 예고기간 : 2014. 7. 16. ~ 8. 05.

○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법 제19조의3”을 “법 제19조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0호”를 “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”로 한다.

제5조 제목 “(공영주차장의 표시)”를 “(공영주차장의 표지)”로 같은 조 제1항 중 “표시는 「도로교통법」 제3조”를 “표지는 도로교통법」 제4조”로 “표시”를 “표지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 중 “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0호”를 “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”로 한다.

제11조 제목 “(주차구획선의 표시 등)”을 “(주차구획선의 표지 등)”으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제19조제2항제2호,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 중 “표시”를 “표지”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b>제2조(적용범위 및 정의) ① (생략)</b>                     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</u>는 다음과 같다.                      1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2. 민영주차장: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23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과 <u>법 제19조의 3</u>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3. ~ 5. (생략)</p>	<p><b>제2조(적용범위 및 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</b>                      ② ----- <u>뜻은</u> -----                      1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2.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<u>법 제19조</u>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(생략)</b>                      ② 「<u>도로교통법</u>」 제22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③ (생략)</p>	<p><b>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(현행과 같음)</b>                      ② 「<u>도로교통법</u>」 제22제22호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5조(공영주차장의 표시) ①</b> 주차장의 <u>표시</u>는 「<u>도로교통법</u>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<u>표시</u>를 준용하되,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,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                      1. ~ 4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~ ④ (생략)</p>	<p><b>제5조(공영주차장의 표지) ①</b> ----- <u>표지는</u> -----                      「<u>도로교통법</u>」 제4조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<u>표지</u>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1. ~ 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9조(요금의 감면) ①</b> 노상 및 직영노외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                      1. 「<u>도로교통법</u>」 제22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2. ~ 5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(생략)</p>	<p><b>제9조(요금의 감면) ①</b>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1. 「<u>도로교통법</u>」 제22제22호-----                      2. ~ 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1조(주차구획선의 표시 등) ① ~ ③ (생략)</b></p>	<p><b>제11조(주차구획선의 표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b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주차전용 건축물) 영 제3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,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건폐율 : 100분의 90이하</p> <p>2.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: 45제곱미터 이상</p> <p>3. 용적률 : 1천500퍼센트 이하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제19조(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주차장 바닥에는 장애인 전용 <u>표시</u>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<u>표시</u>를 하여야 한다.</p> <p>1.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<u>표시</u>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19조(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u>표지</u>-----</p> <p>③ -----</p> <p><u>표지</u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<u>표지</u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[별표 2]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

시 설 물	설 치 기 준
1. 위락시설	○시설면적 80㎡당 1대
2.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장은 제외한다), 종교 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(정신병원·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), 운동시설(골프장·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), 업무시설(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),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, 장례식장	○주거 및 상업지역 : 시설면적 120㎡당 1대 ○그 밖의 지역 : 시설면적 150㎡당 1대
3. 제1종 근린생활시설[「건축법 시행령」 별 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(공중화장실, 대피소,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)은 제외한다]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숙박시설	○주거 및 상업지역 : 시설면적 150㎡당 1대 ○그 밖의 지역 : 시설면적 200㎡당 1대
4. 단독주택(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)	○시설면적 100㎡ 초과 150㎡ 이하 : 1대 ○시설면적 150㎡ 초과 : 1대에 150㎡를 초과하는 100㎡당 1대를 더한 대수 [1+ {(시설면적-150㎡)/100㎡}]
5.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	○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○ 이 경우 <b>다가구주택 및</b>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.
6.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옥외수영장, 관람장	○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○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○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명당 1대 ○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명당 1대
7. 수련시설, 공장(아파트형은 제외한다), 발전시설	○시설면적 350㎡당 1대(시설면적/350㎡)
8. 창고시설	○시설면적 400㎡당 1대(시설면적/400㎡)
9. 학생용 기숙사	○시설면적 400㎡당 1대(시설면적/400㎡)
10. 그 밖의 건축물	○시설면적 300㎡당 1대(시설면적/300㎡)

※ 비고 : 위 내용의 해석에 관하여는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다. 다만, 비고 제4호 단서 중 “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”는 “시설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”로 본다.